제329회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정기회)

국회사무처

- 일 시 2014년12월3일(수)
- 장 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201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75. 201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О	의사일정 상정의 건6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도읍·박대동·김학용·김한
	巫·李宰榮·이만우·김세연·이강후·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오영식·전정희·전순옥·김경
	협·이찬열·원혜영·문희상·박주선·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6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김무성·이만우·심학봉·홍지
	만·김희정·김장실·김을동·정희수·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
	의)(전순옥·김성곤·부좌현·정성호·전정희·이원욱·진성준·오영식·이해찬·박남춘·장하
	나·문병호·남인순 의원 발의)(계속)······6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김상훈·박명재·권성동·이재영·윤명희·정희수·이만우·강석훈·이진복·이완영 의원
	발의)(계속)6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강기윤・이노근・김진태・유승민・김태원・김도읍・이운룡・황영철・박
	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9244)(계속)7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강기윤・염동열・조명철・김상훈・홍문표・김회선・이운룡・한기호・황
	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7)(계속)·······7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1.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변재일·남경필·
	박인숙·박성호·민병주·이재영·강은희·김세연·홍지만 의원 발의)(계속) ·······7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백재
	현·최민희·최재성·홍종학·유은혜·윤관석·최원식·김현미·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7
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도읍·김세연·김을동·김재
	경·문대성·민병주·서용교·정갑윤·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7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7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병헌·백재현·김성주·신장용·박
	인숙·전정희·배기운·유대운·이현재·정성호·민홍철·강동원·부좌현 의원 발의)(계속) ·········7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최재성・배재정・金永柱・안규
	백 · 유대운 · 이미경 · 김성곤 · 최원식 · 배기운 · 김춘진 · 정성호 · 최민희 · 김태년 · 전순옥 · 김제
	남·강동원·문병호 의원 발의)(계속)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성곤·김제남·노회찬·박원
	석・백재현・서기호・신경민・심상정・윤호중・이미경・정진후・최민희 의원 발의)(계속)7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유승우·안덕수·김상민·한선
	교・박창식・문정림・강석훈・조원진・남경필・김동완 의원 발의)(계속)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
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홍종학·강창일·김기식·김경협·김성곤·김영
	록・김우남・남인순・문병호・민병두・박남춘・박지원・박수현・박혜자・박홍근・배기운・백군
	기・서영교・안민석・윤호중・유은혜・이낙연・이미경・이상직・이인영・인재근・유기홍・장하
	나·전순옥·정성호 의원 발의)(계속)·······7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류지영·김기선·김성찬·이주영·이명

	수·염동열·이만우·이한성·박성호 의원 발의)(계속)···································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
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배기운·김현미·우원
	식 · 이상직 · 김우남 · 은수미 · 최원식 · 윤호중 · 남인순 · 박남춘 · 신경민 · 박원석 · 정진후 · 최민
	희·이자스민·홍종학·김재윤·윤관석·김종태·권은희·이해찬·전해철·유성엽·김광진 의원
	발의)(계속)
24.	
⊿-1.	필·이우현·김정록·민병주·홍지만·한선교·조해진 의원 발의)(계속)
25.	
<i>2</i> 0.	협·박인숙·이만우·김재원·주호영·이진복·황영철·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2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열·이미경·홍종학·김재윤·강동원·김성곤·심재권·문병호·정성호·백재현·최원식 의원 발의
00	(계속)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568)(계속)8
29.	
	현 · 이상직 · 심상정 · 오영식 · 윤관석 · 전순옥 · 박남춘 · 김기준 · 박민수 · 이만우 · 김상희 · 백자
	현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363)(계속)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이상직ㆍ김기
	식·이상민·김영환·이종걸·민병두·김용익·정호준·윤호중·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 8
3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565)(계속)8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364)(계속)8
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8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기식·이
	목희・우상호・박민수・김승남・민병두・이원욱・윤호중・김기준・최원식・이찬열・윤관석・노
	응래·최재성·이인영·이학영·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3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임수경·이닉
	연·최원식·권은희·이상일·조정식·전순옥·유승희·유성엽·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8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8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자
	천ㆍ이종걸ㆍ심상정ㆍ배재정ㆍ최민희ㆍ김윤덕ㆍ신경민ㆍ전정희ㆍ배기운ㆍ민홍철ㆍ김현미ㆍ정성
	호 · 윤관석 · 서영교 · 박원석 · 김성곤 · 홍종학 의원 발의)(계속)8
4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동
	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계속) 8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8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홍의락·인재근·박완주·
	주승용·강창일·최규성·김진표·오영식·우윤근 의원 발의)(계속)8
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이학재·홍지만·남경필·
10.	김희국·문대성·함진규·김을동·심학봉·손인춘 의원 발의)(계속)8
4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송호창·박수현·염동열·이만우·서영
11.	교·장하나·윤호중·이인영·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4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회 의원 대표발의)(권은회·홍철호·홍지만·이철우·유

	기준·이진복·이완영·윤영석·조해진·김희국 의원 발의)(계속) ····································
4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
	헌 · 김광진 · 박남춘 · 전순옥 · 장병완 · 백재현 · 김상희 · 정세균 · 김성곤 · 박민수 · 강기정 · 송호
	창 의원 발의)(계속)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8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유대
	운·이춘석·양승조·진성준·노웅래·김현·서영교·박남춘·박영선·진선미·김관영·홍영표·은
	수미·노영민·강창일·우윤근·최민희·최원식·김현미·박범계·이찬열·김광진·백재현·홍익
	표・인재근・이언주・한정애・장하나・설훈・이종걸・최규성・전해철 의원 발의)(계속)8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이
	목희・양승조・김동철・최민희・유승희・임수경・민홍철・유성엽・최원식 의원 발의)(계속)8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8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9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최봉홍・이노근・김상훈・
	이만우·이한성·송영근·이명수·심학봉·김태환 의원 발의)(계속) ······9
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9
54.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9
55.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9
5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정진후・배기운・노영민・이종걸・박민수・이상직・김재윤・전정희・유성엽・최원식 의원 발
	의)(계속)9
5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발의)(김제남 의원 외 9인 발의)(계속)9
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
	근 · 서영교 · 설훈 · 심재권 · 우원식 · 유승희 · 유인태 · 이목희 · 이미경 · 이학영 · 인재근 · 장하
	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홍종학 의원 발의)(계속)9
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
	근 · 서영교 · 설훈 · 심재권 · 우원식 · 유승희 · 유인태 · 이목희 · 이미경 · 이학영 · 장하나 · 정성
	호·정진후·한명숙·홍의락·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9
6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박인숙·박성호·심재철·강은희·
	윤명희·류지영·손인춘·안홍준·이현재·이에리사·이장우·박창식 의원 발의)(계속)9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우남·이춘석·유성엽·김성
	곤·민홍철·홍종학·전정희·김제남·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9
6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강동원·김광진·김성곤·김영록·박수
	현・배재정・변재일・부좌현・유승희・윤관석・이미경 이한성・임수경 의원 발의)(계속)9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심상
	정・강동원・장하나・전순옥・임수경・이원욱・김성곤・문병호・이목희・박완주・최원식・유승
	희 의원 발의)(계속)9
6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9
6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정희수·서상기·박대동·이운룡·홍지만·김태원·김명연·이학재·권
	은희·심학봉·윤재옥·김재경 의원 발의)9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이인영・강동원・김승남・최민
	희·박홍근·윤관석·진성준·김광진·김현미 의원 발의) ······9
6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서상기 · 배덕광 · 민병주 · 심학봉 · 김재

	경·옹지만·류지영·김을동·이만우·강길무 의원 발의)··························9
6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박원석·임수경·윤
	호중・부좌현・박남춘・이개호・원혜영・박병석・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13)9
6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민홍철·김제남·이
	개호・김현・정청래・김현미・이인영・임수경・부좌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63)9
7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김종태・이한성・박윤옥・서상기・김을동・이상일・민병주・강석호・배덕광 의원 발의)9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김종태·이한성·박윤
	옥・서상기・김을동・이상일・민병주・강석호・배덕광 의원 발의)9
7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김종태・이한성・박윤옥・서상기・김을동・이상일・민병주・강석호・배덕광 의원 발의)9
7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황주홍·이개호·박남춘·최원
	식·김성곤·임수경·은수미·우원식·송호창 의원 발의)9
74.	201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한국방송공사 제출)30
75.	201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8 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9건의 법안에 대한신규 상정과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은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행사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법 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 신규로 상정할 9건의 법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67항과 제6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지 아직 15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오늘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2건의 법안은 원자력 안전과 그리고 방송콘 텐츠 활성화에 관한 법안으로서 보다 신속한 심 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도읍・박대동・김학용・김한표・李宰榮・이만우・김세연・이강후・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오영식·전정희·전순 옥·김경협·이찬열·원혜영·문희상·박주 선·유관석 의원 발의)(계속)
-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김무성·이만우·심학 봉·홍지만·김희정·김장실·김을동·정 희수·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김성곤·부좌현·정 성호·전정희·이원욱·진성준·오영식· 이해찬·박남춘·장하나·문병호·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김상훈·박명재·권성동·이재영·윤명희·정희수·이만우·강석훈·이진복·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강기윤・ 이노근 · 김진태 · 유승민 · 김태원 · 김도 읍·이운룡·황영철·박덕흠 의원 발의)(의 안번호 9244)(계속)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강기윤· 염동열 · 조명철 · 김상훈 · 홍문표 · 김회 선ㆍ이운룡ㆍ한기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의 안번호 11347)(계속)
-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11.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 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변재 일 · 남경필 · 박인숙 · 박성호 · 민병주 · 이 재영·강은희·김세연·홍지만 의원 발의) (계속)
-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이인영·백재현·최민희·최재성·홍종 학 · 유은혜 · 윤관석 · 최원식 · 김현미 · 박 완주 의원 발의)(계속)
- 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도읍·김세연· 김을동 · 김재경 · 문대성 · 민병주 · 서용 교・정갑윤・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병헌·백재현· 김성주 · 신장용 · 박인숙 · 전정희 · 배기 운 · 유대운 · 이현재 · 정성호 · 민홍철 · 강 동원·부좌현 의원 발의)(계속)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최재성·배재정· 金永柱・안규백・유대운・이미경・김성 곤·최원식·배기운·김춘진·정성호·최 민희 · 김태년 · 전순옥 · 김제남 · 강동원 · 문병호 의원 발의)(계속)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성곤·김제남· 노회찬 · 박원석 · 백재현 · 서기호 · 신경 민·심상정·윤호중·이미경·정진후·최 민희 의원 발의)(계속)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 원 대표발의)(이상일·유승우·안덕수·김상 민·한선교·박창식·문정림·강석훈·조원 진・남경필・김동완 의원 발의)(계속)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 발의)(홍종학·강창일·김기식·김경협·김 성곤 · 김영록 · 김우남 · 남인순 · 문병호 · 민병두 · 박남춘 · 박지원 · 박수현 · 박혜 자·박홍근·배기운·백군기·서영교·안 민석 · 윤호중 · 유은혜 · 이낙연 · 이미경 · 이상직 · 이인영 · 인재근 · 유기홍 · 장하 나 · 전순옥 · 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강기윤·류지영·김기선·김성찬·이 주영 · 이명수 · 염동열 · 이만우 · 이한성 · 박성호 의원 발의)(계속)
-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배기운・ 김현미 · 우원식 · 이상직 · 김우남 · 은수 미 · 최원식 · 윤호중 · 남인순 · 박남춘 · 신 경민 · 박원석 · 정진후 · 최민희 · 이자스 민 · 홍종학 · 김재윤 · 윤관석 · 김종태 · 권 은희ㆍ이해찬ㆍ전해철ㆍ유성엽ㆍ김광진 의 원 발의)(계속)
- 2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전하진·손 인춘 · 남경필 · 이우현 · 김정록 · 민병주 · 홍 지만・한선교・조해진 의원 발의)(계속)
- 2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김상훈· 박명재 · 김경협 · 박인숙 · 이만우 · 김재 원・주호영・이진복・황영철・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 2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정청래·김민기·유대운·이춘석·배 기운 · 이찬열 · 이미경 · 홍종학 · 김재윤 · 강동원 · 김성곤 · 심재권 · 문병호 · 정성

-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호 8568)(계속)
-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전병헌·박주선·배재정·이찬열·배 기운·부좌현·이상직·심상정·오영식· 윤관석·전순옥·박남춘·김기준·박민 수·이만우·김상희·백재현·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호 11363)(계속)
-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이 상직·김기식·이상민·김영환·이종걸· 민병두·김용익·정호준·윤호중·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 **3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565)(계속)
-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364)(계속)
- 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김기식 · 이목희 · 우상호 · 박민수 · 김승남 · 민병두 · 이원욱 · 윤호중 · 김기준 · 최원식 · 이찬열 · 윤관석 · 노웅래 · 최재성 · 이인영 · 이학영 · 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3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 민·임수경·이낙연·최원식·권은희·이 상일·조정식·전순옥·유승희·유성엽·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이종걸·심상정·배재정·최민희·김윤덕·신경민·전정희·배기운·민홍철·김현미·정성호·윤관석·서영교·박원석·김성곤·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 4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 노근 의원 발의)(계속)
-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 4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 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홍의락·인재 근·박완주·주승용·강창일·최규성·김 진표·오영식·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 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 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이학재·홍지 만·남경필·김희국·문대성·함진규·김 을동·심학봉·손인춘 의원 발의)(계속)
- 4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 발의)(신계륜·송호창·박수현·염동열·이 만우·서영교·장하나·윤호중·이인영·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4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권은희·홍철호·홍지만·이철우·유기준·이진복·이완영·윤영석·조해진·김희국 의원 발의)(계속)
- 4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전병헌·김광진·박남춘·전순옥·장 병완·백재현·김상희·정세균·김성곤· 박민수·강기정·송호창 의원 발의)(계속)
-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유대운·이춘석·양승조·진성준·노웅래·김현·서영교·박남춘·박영선·진선미·김관영·홍영표·은수미·노영민·강창일·우윤근·최민희·최원식·김현미·박범계·이찬열·김광진·백재현·홍익표·인재근·이언주·한정애·장하나·설훈·이종걸·최규성·전해철 의원발의)(계속)
-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 의)(장병완·이목희·양승조·김동철·최민 희·유승희·임수경·민홍철·유성엽·최 원식 의원 발의)(계속)
-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최봉홍·이노근· 김상훈 · 이만우 · 이한성 · 송영근 · 이명 수·심학봉·김태환 의원 발의)(계속)
- 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5.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관한法律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 의)(유승희·정진후·배기운·노영민·이종 걸 • 박민수 • 이상직 • 김재윤 • 전정희 • 유 성엽ㆍ최원식 의원 발의)(계속)
- **5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 원 발의)(김제남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 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 원 대표발의)(홍의락·김상희·김영환·박 완주 · 박홍근 · 서영교 · 설훈 · 심재권 · 우 원식 · 유승희 · 유인태 · 이목희 · 이미경 · 이학영 · 인재근 · 장하나 · 정성호 · 정진 후·한명숙·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 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상희·김영환·박완 주 · 박홍근 · 서영교 · 설훈 · 심재권 · 우원 식 · 유승희 · 유인태 · 이목희 · 이미경 · 이 학영·장하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 홍의락·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 6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박인숙・박성호・심재 철 · 강은희 · 윤명희 · 류지영 · 손인춘 · 안 홍준 · 이현재 · 이에리사 · 이장우 · 박창식 의원 발의)(계속)
-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우남·이춘석·유성 엽 · 김성곤 · 민홍철 · 홍종학 · 전정희 · 김 제남 · 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 6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강동원·김광진·김성 곤·김영록·박수현·배재정·변재일·부 좌현 · 유승희 · 윤관석 · 이미경 이한성 · 임 수경 의원 발의)(계속)
-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

- 원 대표발의)(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 석 · 심상정 · 강동원 · 장하나 · 전순옥 · 임수 경 · 이원욱 · 김성곤 · 문병호 · 이목희 · 박완 주·최원식·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6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정희수· 서상기 · 박대동 · 이운룡 · 홍지만 · 김태 원 · 김명연 · 이학재 · 권은희 · 심학봉 · 윤 재옥 · 김재경 의원 발의)
-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이인영ㆍ강동원ㆍ김승 남ㆍ최민희ㆍ박홍근ㆍ윤관석ㆍ진성준ㆍ김 광진 · 김현미 의원 발의)
- 6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조해진·서상기·배덕광·민병주·심 학봉 · 김재경 · 홍지만 · 류지영 · 김을동 · 이만우·강길부 의원 발의)
- 6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박원석· 임수경 · 윤호중 · 부좌현 · 박남춘 · 이개 호 · 원혜영 · 박병석 · 김기준 의원 발의)(의 안번호 12113)
- 6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민홍 철 · 김제남 · 이개호 · 김현 · 정청래 · 김현 미ㆍ이인영ㆍ임수경ㆍ부좌현 의원 발의)(의 안번호 12563)
- 7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 의)(조해진·김종태·이한성·박윤옥·서상 기 · 김을동 · 이상일 · 민병주 · 강석호 · 배 덕광 의원 발의)
-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김종태· 이한성 · 박윤옥 · 서상기 · 김을동 · 이상 일·민병주·강석호·배덕광 의원 발의)
- 7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 의)(조해진·김종태·이한성·박윤옥·서상 기 · 김을동 · 이상일 · 민병주 · 강석호 · 배 덕광 의원 발의)
- 7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 원 대표발의)(유승희·황주홍·이개호·박

남춘·최원식·김성곤·임수경·은수미· 우원식·송호창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64건의 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해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나오 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조해진 위원장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12월 1일, 2일 3차례 회의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계속 심사 법안을 제외하고 주요 의결 대상 법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우주소년 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우주소년단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제명을 수 정하고,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및 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 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가격안정 조치를 삭제하는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조한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조항을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홍종학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

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범위를 무선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기기로 확대하고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하나 의원, 권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 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는 등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전병헌 의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방 통위가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하여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둘째, 한미FTA협정에 따라서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부장관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적정 규모로 배정할 것과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과의관계를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미래부장관의 요청을 존중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유승희 의원,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시정요구 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 고.

둘째,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 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 록 했습니다.

다음,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범부처적 방사능 방재 대응체계를 명료화하 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에 국민안전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을 추가 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 략하게 보고드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 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조해진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상호 간사님을 비롯해 법안심사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 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소위 보고서가 없어요. **○위원장 홍문종** 금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 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한 64건의 법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 11항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 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 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 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6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 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 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6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

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 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 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6항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 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 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 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대상 법안 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위

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쟁점이 거의 없고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 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11항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의결 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법안의 제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1조 '목적'제2조 '협조 및 지원'제3조 '보조 등'제4조 '조세감면 등'까지 이상 4개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5조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제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제7조 '예산서 등의 제출'제8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까지 이 상 4개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9조 '업무의 검사 등' 제1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 '과태료'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우 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연구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18항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25항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0항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방송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7항 이상민 의원이 대 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 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 38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정부가 제출한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 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정부가 제출한 방송 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9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2항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 정 제63항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 사일정 제6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64 건의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 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미래부장 관과 방통위원장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잠깐만요, 55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 는데 지금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이 법안에 명시 된 한자를 다 한글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놓친 것 같은데 명칭을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창조과 학부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주요 법안들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의 체계를 비롯하여 세심하게 심의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조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 소프트웨어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그리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파법 등 오늘 의결해주신 법률안들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잘 새겨서 향후 업무수행 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 장님, 그리고 조해진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심사 소위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 러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안들이 통과 되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근거가 명확 화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전에 당 사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이 되며 한국교육방 송공사 명칭의 사칭 방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 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위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이은철** 존경하는 홍문종 위 원장님, 그리고 조해진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 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미방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 률안인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들은 강화된 원전 및 방사선 안전 환 경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 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법률 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 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신규로 상정한 9건의 법안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민희 위원 미래부장관님, KT와 스카이라이 프 유료방송 합산 규제, 저희가 어제 이 법률안 토론하다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

그런데 미래부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은 동의하시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 ○최민희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유료 가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2700만 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2500……
- ○최민희 위원 이게 9월 말에 2649만 명이니까 지금 한 2700만 명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한 850만 명 되나요? 현재 KT와 스카이라이프 합산해서 가입 가구 수가 얼 마나 됩니까? 730만 명 되나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 정도 됩니
- ○최민희 위원 그러면 3분의 1 규제해도 100만 명 정도 여유가 있게 되나요? 한 184만 명, 그렇 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아직은 여유 가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래부는 3분 의 1 합산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동일 서비스 동일 원칙 이런 것도 저희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 고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거 나 시장 변화에 맞춰 줘야 되는 그러한 규제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불가피한 측 면은 있다고 봅니다.
- ○최민희 위원 그리고 합산 규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영업에 조금 제약을 받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KT 하나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
- ○최민희 위원 아니, 현재요. 미래는 저희가…… 현재 반대하는 것은 KT 하나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지금 케이블 업계는 찬성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세세하게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그것 확인 안 해 보시면 안 되지 요, 이 중요한 사안에서. 사업자 갈등조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되고,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다음에 SK브로드밴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 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찬성하는 편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LGT도 찬성하고 있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 ○최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것은 KT 하나인데요. KT가 내세우는 논리가 주로 시청권 제한이잖아요. 그렇지요?

(홍문종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KT 독점 방지, 독 점 완화, 이런 겁니다.

시청권 선택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제가 수치를 여쭈어 본 것은 아직도 여력이 있고, 그리고 그 것보다는 KT 독점의 폐해가 더 큰 시점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해소해야 될 핵심 문제가 뭐냐, 이걸 볼 때 이 법은 빨리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C&M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하고 있는데요. 혹시 미래부장관님은 C&M 정리해고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100명이나 오차가 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109명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가 방통위와 미래 부에 티브로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진행하셨습니까? 두 분 다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조사 요청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동관계, 고용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조사는 하지는 않고, 다만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C&M 쪽에 하청업체 일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권유는 해 왔습니다.
- ○최민희 위원 미래부장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 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방통위원장 님 의견과 같습니다.
- ○최민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최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

장관님, 제가 C&M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 겠는데요. 지금 100여 명의 대량 해고, 비정규직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지요? 그런데 이문제의 원인이 2008년 당시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가 KCI의 C&M 인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 허가 승인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지적 들어 보셨습니까?

- **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최원식 위원 지적은 대개 두 가지 내용이에 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SO 지분 소유가 49%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맥쿼리가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KCI가 C&M 지분 61%를 취득하는 것을 정통부가 허가하고 방송위가 승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은 있지만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방송위가 승인 과정에서 KCI가 C&M 지분 매입비용 2조 1200억 중에서 70%, 1조 5000억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했는데 이것을 몰랐는지, 재정 능력 평가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량 빚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구조조정 해

야 되고 또 비정규직화해야 되고 대량 해고해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SO 재허가 지금 미래부가 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최원식 위원 그렇지요. SO 재허가 항목에 있 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먼저 그냥 재정 능력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항목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 능력과 재정 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재 정 능력에 채무 상황, 이번에 채무가 그렇게 많 은 것을 체크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평가지표를 계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배점도 높여야 된다, 채 무를 통한 경영이 사태를 악화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SO가 하도급이 상당히 일반화되 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하도급에 관련되어서는 굳이 얘기하면 조직 및 인력 운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하도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협력업체 와 비정규직의 인력 운용 및 공정거래 항목이 있 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배점이 더 높아져야지 이런 부분의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지 않느 냐.....

그다음에 재허가 총점의 40%를 차지하는 방송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력 업체 비정규직 운용 항목을 같이 포함해서 전면 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계 상황에 맞는 재허가 평가 항목을 만드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 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사항목 전면 개편을 추진해 주시고 계획과 경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이 지난 11월 26일 SKT 점 유율 유지를 위해서 15만 명 개인정보를 87만 차 례나 걸쳐서 불법으로 이용해서 선불폰 10만 대 를 개통해서 68억 원을 부당이득 챙겼다, 그래서 SK텔레콤 불구속 기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제가 국감에서 알뜰폰, 선불폰 충전 잔액 1000원 미만이 67% 등등 있어서 알뜰 폰 가입자 400만 중에서 100만가량이 허수일 수 도 있다라고 한번 주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기소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검토해 보겠 다 이런 얘기 하셨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 ○최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선불폰 개통자 전체에 대해서, 이걸 몇 년 전에 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수조사 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어제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 ○**최원식 위원** 시작하셨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시작했습니다.
- ○최원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장관님, 내일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서 공청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법 안에 보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서비 스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공공기 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공공기관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 느냐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클라우드 서비스 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의락 위원 장점이 있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정보와 정책을 한 서버에 모아 두고 공유하는 것이 정보 공유와 공개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 문점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법안에 보면 공공기관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도입을 노력해야 된다,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등으로 명기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서 협회 및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의무조 항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률로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 생각을 알 고 싶어서, 내일 공청회를 하는데 일단 미리 여 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원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전자정부법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보안 대책 및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국정원이 적합성 등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일반 기업,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국정원의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먼저 앞에서 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클라우드 산업은 IT 산업의 미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 고 있고 공공기관이 사용해서 이 산업을 일으키 는 부분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 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교육기관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교육 연구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접근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시장 형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정보 보안에 관련된 말씀은 공청회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수정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정원 부분은 아마 논란이 있으면 상임위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해도 좋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홍의락 위원 하여튼 우선은 제가 따지는 것보다 정부 입장을 여쭤 보고 싶어서 묻는데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사실 우리가 법이 아니라 예산으로도 지금 컴퓨팅 관련, 미래부 예산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꼭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도 정부 예산에 보면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해서 1663억원인가 이렇게 구축,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 성장기반 구축사업으로 67억원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법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부터 성장을 시켜야지 꼭 공 공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공공 부분에 기생해서 일반기업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업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여 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컴퓨팅 관련 법률로써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활 성화돼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없는데 꼭 법률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 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국에서도퍼블릭한 시장이 클라우드 산업 활용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가지모임에 가 봐도 퍼블릭 조달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또 다른 산업 섹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분야를 따로떼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굳이 법안을 많이 안 만들고 이런 것이 육성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 클라우드법안의 육성이 없으면 오히려 과거의 형태대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가 강조될 우려가 있고 또 집단시설을 따로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나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법을 여기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정부하고 공공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공공 부분을 도입해서 굳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첫 출발이 좀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클라우드는 이미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도요.

○홍의락 위원 민간사업자는 있는데 정부가 꼭 들어가서 이렇게 임무로 견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대부분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공공조달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견인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정책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장분석을 해 보면 공공조달 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어저께도 소프트웨어 산업체들 간담회를 한 20개 업체하고 같이했는데 공공조달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입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데 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데 다시 논의해 보겠 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 ○위원장대리 조해진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은 수조 원에 달하는 연구장비가 구입이 돼서 운 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리 및 운영이 부실해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두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입니다.

장관님,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 ○**우상호 위원** 오늘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보 면 외주제작 환경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는 그러 한 법률이 제기됐는데 원래 외주제작을 법적으로 할당을 한 것은 콘텐츠 제작업체를 활성화시켜서 콘텐츠 산업 자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국의 특수관계자에게, 외 주제작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폐지하는 문제가 과연 그런 애초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에서 이견이 있어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 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신호들이 제기 되면 정책 당국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C&M 사건 결국 고공농성까지 갔는데 제가 지난 번 국정감사 때 말하자면 SO 플러스 밴드 업체 들의 설치기사들의 고용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현안이다 이것에 대해서 결합상품 판매까 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라, 두 번째 SO의 재허가 시에 소위 말하면 조직의 안정성 항목에서 노동 조건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분규를 SO 재허 가의 사유로, 말하자면 판단근거로 포함시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은 방송통신위원 회의 조사, 지금 결합상품 판매시장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 니다.

○우상호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결국 티 브로드나 또 C&M 또 LG U⁺ 소위 말하면 인터

넷 밴드 업체 그다음에 방송 SO 업체들에서 계 속 터져 나오는 소위 협력업체의 고용조건에 관 한 분규 이게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심각하거든 요. 그러니까 본사는 협력업체의 문제라고 해서 자기들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협력업체 가 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본사가 협력업체의 고용조건을 고 려해서 협력업체에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답변드리겠 습니다.

소위 문제는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에서 나가는 재하도급 재하청 재재하청 거기서 생기는 고용의 불안정 내지 후려치기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도 이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본사가 개입 을 어느 정도 해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재 노사관계 추세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 니다마는 그것을 법적이나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는 사실……

○**우상호 위원** 이게 결국은 다수의 소비자인 국 민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업 아닙니 까? 대통령께서 서비스업을 강조해서 일자리 창 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업들이 대 부분 이런 비정규직, 하청 재하도급의 근거로 열 악한 환경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본사 나 대기업이 사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의 노무관계 를 고집해서 피해는 결국 말단에 있는 노동자와 그분들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입고 있 는데 감독관청이 제대로 된 개입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개입하는 것이 정 부가 해야 할 일이지, 지난번 단통법처럼 문제가 시작된 다음에 뒤늦게 법 만들고 뒤늦게 접근하 면 뭐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래서 말씀드리 면 아까 몇 분 위원들이 말씀들을 주셨지만 재허 가 조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효적인 그러한 지 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지금부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신 호를 주시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신호를 줘야만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관련된 업체가 전부 다 분규에 휩싸여서 2년을 보냈는데 정부가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책임방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사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노무관계 하라고 지도하고 그렇게 못 하는 업체를 계약을 해지해서 잘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갈아타라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것은 정부의 감독 소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사권은 방통위에 있고 허가권은 미래부에 있는 이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휴 대폰시장 통신요금시장도 그렇고 결합상품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 이래요. 조직개편을 완전히 엉망 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박근혜 정 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꿀 수 없다면 두부처의 수장이 정말 긴밀하게 이런 문제를 상의해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시겠어요? C&M 사건 이것 해결하시겠어요?

같이 좀 말씀해 보세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 ○우상호 위원 '예'가 뭐예요?

(웃음소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동의한다는 말입 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158명 중 155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고 있습니다.
- ○유승희 위원 지금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예외조항을 삭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공공기관으로 포함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을 제정을 했는데 2007년 11월 전병헌 의원 주도로 해서 KBS EBS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불가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뉴라이트 등에서는 KBS EBS 공공기관 지정취소를 반대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공영방송의 이사에 의한 해산이 가능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께서?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고 있습니다.
-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부분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개정안 아닙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좀 그런 문제의 소지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어디 소관 기관이 되 는 거지요, 이게? 기재부가 되는 겁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재부로……
- ○유승희 위원 그러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 통신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이것 심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정부 여당에서 발의 가 될 수 있도록,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 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의원발 의 법으로 나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과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유승희 위원 그 당시에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 취소를, 공공기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그때는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부당하다 취소를 했는데 공공기관 지정하는 걸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지요?

그리고 KBS나 EBS는 큰 틀에서는 공공기관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체성이 언론이기 때문이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다.

(조해진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희 위원 그래서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께서도 문제가 있는 점을 인

정을 하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의견 개진을 국무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고 아주 심각하게 민주주의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전에 우상호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 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상파 차원에 서는 또 이런 법안이 나올 수는 있는데 독립제작 사라든지 드라마제작사의 경우에는 우려가 있습 니다. 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아직 심사 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송 통신위원회는 지상파도 중요하고 또 독립제작사 는 미래부랑 걸쳐 있는 부분이라 다 중요하기 때 문에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비율 폐지로 인해 서 외주제작사가 지금 상태보다 더 불이익한 지 위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순수외주제작 비율이라 든지 외주제작 인정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호하는 방안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 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보호조치를 함께 취해서 지상파와 이런 독립제작사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가 할 일이 뭐 냐 이렇게 수수방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M 사태가 고공농성까지 가게 된 것은 저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사각지 대가 있어서 정부조직 개편 시에 이런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력을 해서 고공농성 으로까지 가는 이런 사태는 막았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사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사측에서 정성껏 성심성의껏 그야말로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민을 생각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 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회적인 신뢰관계가, 자꾸 이 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무너지면 국민이 모두 다 피곤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 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두 분 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법안 발의를 오래전에 했는 데 법안소위 논의 과정 속에서 자꾸 누락이 됐는 데요. 별정우체국법 발의를 벌써 한 1년 전에 했 는데요, 이혼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 보장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 넷 임시조치 개선에 관련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큰 이의가 없는 법이고 정부 측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 안소위에서 논란이 없는 주요 법안은 빨리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자꾸 뒤 로 밀리니까, 오늘도 상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 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정이 돼 있고 계속해 서 더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법안은 조속 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체회의에서 드리고 양 간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 운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개정안 을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지자체별로 상당한 재정적인 격차가 현재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재 정력이 우월한 곳에 또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해 서 이런 연구기관이 지방조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력의 격차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개 발 격차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 가 결국은 지역 간 개발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정안을 낸 취지는 제가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 법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금년 1월에 개정이 된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하고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금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에 보면, 국가가 공공기관의 확장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을 금지토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게 금년 1월이 거든요. 그래서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와 배치되는 이런 법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 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재정력 격차에 따라서 결국은 입찰 비슷하게 조금 여건이 좋은 곳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우려하신 사항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정될 안으로 보고 있고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또 이 문제가 보면 법 안정성에도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된 지가 1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연구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해서 공유재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을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소위 양성화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허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국유재산 취득에 상대적인 약자인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재산법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혹시 정부의 의견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류지영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위원장 홍문종 아니, 이재영……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장관님, 국감에서 미래전략에 대해서 질의 몇 번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때 계획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초안을 받아 봤어요. '미래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그런데 말 그대로 초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에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초안인가 하는 생각은좀 듭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빈틈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미래전략, 가칭 그냥 쓸게요. 미래전략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외부에도 좀둘 생각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그것도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저희가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내부조직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랑 인터페이 스를 하기 위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를 설 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거기의 실무 작업도 하 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외부 에 어떤 상설조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운영하 고자 하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마 는, 왜 그런가 하면 미래전략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을 찾아보니까 국내에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보고서를 내고 운영을 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외부 에 상설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 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 습니다.

OI재영 위원 그런데 이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50년 100년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정부 부처 안에다가 두는 것이 과연 맞을 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조직 내에 있으면 그 조 직의 필요에 의해서 미래전략이라는 큰 주제가. 여기서 5도만 틀려도 끝에 가서는 굉장히 큰 격 차가 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과연 안에 두는 게 맞는가, 오히려 이것은 정부에 지원을 해 주 7.....

솔직히 말해서 R&D라든지 연구기관의 역할이 라는 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결국에는 좀 투명하고 또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좀 객관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 는데, 이런 미래전략위원회라는 것을 또 단 20명 내외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미래전략이라는 굉 장히 중요한 화두를 논의할 수 있을까, 또 이것 을 컨트롤 하려고 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내 용이 오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내부 조직에서 미래전략 자 체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주 자유스럽 고....

○이재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만 드리 자면, 나중에 끝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안에 벌써, 미래전략위원회 안에 미래전략 수립 총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에디팅(editing)을 하시겠다는 뜻으 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 분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 이상 한 또 말도 안 되는 뭔가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 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외부에 많은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카이스트에서 나온 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받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방대한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논 의를 했고, 여기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미래전략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같은 정도면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이재영 위원 좀 객관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 런 연구를 꾸준히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 각이 드는데, 이것 다 읽어 보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한번 죽 넘겨봤습 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데하고 오히려, 좀 틀을 잡아서 이런 데다가 좀 집중적으로 미래전 략을 만들어 내라라고 숙제를 던지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닌지, 그런 것 좀 고민을 해 주셨 으면 하는데,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도 이미 고민을 했고, 카이스트의 이광 형 교수가 이끄는 그 팀, 매우 훌륭하고 좋은 보 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전략이나 미래계획은 성 급하게, 조급하게 기한을 정해 놓고 빨리빨리 만 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미래 전략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카이스트의 팀 또는 대학원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 느 기관을 선정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 에 따라서 어떤 스케줄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위 원회 중심으로 일단 전체적인 어젠다를 셋업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둘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은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거나 또 실무로 만든다 거나 이런 자율적이고 오픈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창 위원님……

○송호창 위원 장관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이언스빌리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의 노하우를 제대 로 살려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은퇴 과학기술인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 회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과학기술인들의 편의를 도우면서 공동체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시설, 공간을 좀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창 위원 상당히 필요하고 과학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과학자 모임에서 원로 과학자께서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사업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짚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중요한 취지의, 좋은취지의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공사나 기본구상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이 추진을 하는 주체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송호창 위원 과기총이 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총연합회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의 부정 비리나 그리고 연구개발비를용도 외 전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예산집행을 엉뚱하게 하거나 뭐 계약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이게 지금 경영이나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 감사나 형사고발 조치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 과총에서 사이언스빌리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총괄하게 되는 데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더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이언스빌리지를 만드는데 SKT가 지금 이 사업의 51%를 출자를 하고, 250억인가요, 출자를 하고 대신에 사이언스빌리지에서 u-헬스케어 부분을 SKT에다가 우선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과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한이 없는 상태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창 위원 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마치 국가기관이 직접 기부채 납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MOU 체결을 해

놨고, 여기에다가 지금 과기총의 사무총장하고 CR 부분, SKT의 부문장이 이런 협약까지 체결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부는 권한이 없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SKT에게 이런 어떤 권한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식입장인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렇지만 MOU는 그대로 유지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지금 그대로 유효한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MOU는 미래 부가 작성한 MOU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 금 말씀하신 데에……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리고 SKT에게 이런 우선권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닌 거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호창 위원** 하지만 250억 출자를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것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창 위원** 거기서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SKT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좋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참여를 해 주는 건 좋은데, SKT 자체가 최근에도 나타난 것처럼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서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지고 유령 선불폰까지만들어서 68억 원 정도의 개통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불법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게 계속, 관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런 회사가 u-헬스케어,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서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일단은 SKT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이언스빌리지에 기부를 하 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생각이라고 일단 놓고요.

그다음에 그 건립하는 문제하고 그 이후에 헬

스케어가 됐든 뭐가 됐든 운영을 해서 입찰을 하 거나 선정하는 문제는 전혀 독립적이고 별개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운영에 관한 것들은 실행계획을 짜 나가는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u-헬스케어 같은 중요한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SKT가 지금 보여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정보를 불법적 으로 유통을 한다든지 부정하게 이런 사업을 운 영하는 데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 요 소가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한번 살펴보 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호창 위원 이것이 단순한 뭐 공공복지, 복 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이언스빌 리지 자체가 또 부정하게, 불법하게 운영이 되거 나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를 선 정하는 데서도 엄정하고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총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산하기관이 정확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병완 위원** 방통위원장님!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장병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KBS하고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무장을 좀 단단히 하셔야 한다는 측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운법과 방송법은 지향하는 가치 가 아주 다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 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공기관 운영법 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뭐 이런 법률로 해서 특정 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사업들의 어떤 경영의 효 율성을 기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만약에 이 공운법의 적용대상이 된 다면 예를 들어서 KBS는 사실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되어 버리는 거지

요, 방통위가 아니고. 즉, 말해서 그러면 기재부 하고 방통위 양쪽의 관할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 데, 그렇게 되면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 는 방송의 중립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사실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사실 제가 정부에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공운법 을 제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장병완 위원 제정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 두 가치가 병립할 수는 없는 저기다, 그래서 사실 당시 운영위인 지금 현재 운 영위원회에서 주무부처, 공운법의 주무 위원회였 는데 당시 문방위하고 사실은 KBS 쪽에서 워낙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당시 양당의 지도 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제외해 야 한다는 저기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냥 여타 기관…… 이번 새누리당에서 법 제정안 을 낼 때도 이것은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낸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만한 경영, 최 근에 여러 가지 해외투자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 히 공공기관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그러 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 개정하고, 지 금 KBS의 경우에는 가장 지상 최고의 가치인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 확보 이것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위원장님이 아주 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은 대처를 하셔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장병완 위원 정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장병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홍문종 예.
- ○**장병완 위원** 위원장님께도 좀 건의드리는데, 당시 이 법을 제정을 할 때도, 공운법 제정할 때 도 운영위에서보다도 문방위에서 굉장히 이것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포 함해서 왔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었 거든요.

그래서 문방위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운영

위 쪽에 공식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홍문종 예, 말씀하시지요.
- ○민병주 위원 방금 공운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하고 장병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 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한마디 추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운법 중에 대부분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외하는, KBS와 EBS 부분이방송법과 연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외하는 항목이 통째로 빠져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서명을 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운법이,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운법이 KBS, EBS만 넣기 위한 그런 법은 아니고 공기업 개혁을 위한 법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KBS, EBS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똑같이 미래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 관련된 출연연 부분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나요?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미래부장관님께 본질의에서 여쭈 었던 것을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통합방송법 관련해서 공청회 한 것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최민희 위원 거기서 KT 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통합방송법 내용 중에 합산 규제에 대해서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기존 가입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더라고요. KT가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케이블로 치면 한 187개 채널 정도에 해당하는 방송을 가구당 6600원~7000원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입자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료 가입자 평균 부담 비용이 8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6600원~7000원이면 아주 싼 거지요. 출혈 경쟁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최근 일이에요, KT가 지금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업을 확장하려 는 거겠지요.

○**최민희 위원**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출혈하면서 사업을 확장할까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글쎄요.

○최민희 위원 그게 아까 부사장이 얘기한 '기존 가입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합산 규제를 할 경우 33%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가입자가? 그런데 이미 KT와 스카이라이프가 합쳐서 현재 40%다 그러면 '우리는 7%의 기존 가입자를 탈퇴시켜야 된다'이런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한 저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무자가 답변해 보실래요? 이런 일이 있었지 요?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예.

○최민희 위원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게 지금 한 지역인 건지, KT가 전국 동시다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그것까지 정확하게 아직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KT가 지금 합산 규제 논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가의 출혈 경쟁을 하면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 사실은 파악하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예, 어 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 어느 정도 얘기해 보시라고 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전국적 인 현상인지 아닌지 그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보 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있어요?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몇 건 까지도 지금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최민희 위원 그러면 파악한 어느 정도……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전체적 흐름을, 그런 게……
- ○최민희 위원 흐름을 감지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예.
- ○최민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 제가 얘기 한 것 맞지요? 한 지역에서 가구당 6600원~7000 원 정도의 저가 상품으로 파고들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정확하 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 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지금 뭡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정확히는 모른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 은.....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그러니 까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6600 얼마까지는 모르 겠습니다.
- ○최민희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전체 흐름만……
- ○최민희 위원 흐름을 어떻게 감지하셨어요, 그 러면?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돌아가 는 느낌……
- ○최민희 위원 느낌이요? 행정을 느낌으로 하십 니까?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 신문이 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그 느낌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부가 합산 규제를 할 경우 점유 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거나 혹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실무자가 답변한 건데 '점유율 제한을 3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점유율 제한 비 율을 영에 위임한다 이것은 논외고, 3년 일몰제 는 왜 나온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모든 정부의 입장 이 과도한 규제나 필요 없는 규제가 혹시 있으면 소위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규제들은 일몰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기본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최민희 위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래서 이 사항이 혹시 상한선을 정하나 안 정하나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저해되지 않고 그러면 굳이 규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요. 이 미 KT의 결합률, 결합 판매율이 72.5%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대충 80% 정도까지밖에 못 한 다, 거의 포화상태다, 이렇게 보는 흐름을 말씀하 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몰제로 하고 한번 지켜보자, 왜냐 하면 일몰제라는 게 3년 일몰제를 했다고 해서 3 년 지나서 다시 일몰을 연장할 수 없는 게 아니 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 ○최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

미래부장관님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3년 일 몰제 필요성을 얘기하실 때 표현이 '자유로운 경 쟁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표현은 잘못하다가 어떤 거대 기업만 키우는, 그 래서 '공정한 경쟁'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창조경제는 항상 경제민주화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 그 런 지적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경쟁은 좋은데 자 유로운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되는 그런 철학 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방통위원장 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이 됐는데 제가 법안소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러니까 부서의 입장은 있지요,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그런데 입장을 할 때는 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과 실태를 보고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최원식 위원 판단해서 세우는데 그런 로우 데 이터(raw data)를 위원들한테, 특히 다 할 필요

는 없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원래 취지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 그래서 규제 완화로 투자확대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라는취지지만 드라마 제작업체나 문체부에서도 지금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면 오히려 외주제작 환경을 다, 외주제작 생태계를 다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위축될 것이다라는 이런 반대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안건을 심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제작협회나 또 특수관계자협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의 다양한 견해와 근거들을 같이 판단해서 보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다음에 외주제작 비율이 각 방송사업자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주제작사가 단독으로 저작권 보유한 게 몇 % 되는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낮은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업자별로 다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있고 방송사업자별로 어떤 관계로 해서 됐고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시장 환경, 각 입장에 대해서 로우 데이터 그대로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의견만 주시니까 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다음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EBS 이춘호 이사장님에 대해서 혹시 계속 조사하신 것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추후로 더 조사한 것 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 서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최원식 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 제가 질문하니까 그냥 급해 가지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닙니다. 기존에 벌 어진 일에 대해서 약간의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 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은 1억 2000 중에서 본인이 억울 하다고 주장하는 것 있는데 그것은 사실 조사하 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은 벗겨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확인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조사된 것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진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진행되는 대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지금 방통위에서 입장을 검토를 하시는 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 까? 입장에 대해서도 아니면 못 하시겠다 그러면 또 제가 제 입장을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가능하 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최원식 위원 아니요, 임명권자가 피임명권자에 대해서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해임권한도 있는 거지요, 일단? 법률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 틀렸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닙니다.

○최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EBS 이사장 문 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억울함이 없 도록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입 장을 정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간사님, 1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5분 주셔서 5분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괜찮은 사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LG\ U^{\dagger}\ v$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는 협력업체의 다단계를 막았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업체가 노사의 안정성이 떨어지거 나 말하자면 분규를 일으켜서 고객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요. 본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다른 데도 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사례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것 들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지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꾸 C&M이나 이런 데가 '협력업체 가 한 거라 우리는 관여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 떤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다른 회사의 유 사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 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 이고요.

지금 말씀 듣다가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하다 말씀드리는 건데 방송정책은—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부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오래된 사회적 합 의가 있습니다. 제조업 다루듯이 다루는 게 아니 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규제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 에요. 방송시장의 특성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 다. 아까 공공기관 지정 얘기했는데요. 아니, KBS를 조선중앙통신처럼 만드실 거예요? 국영 방송이 옳지 않잖아요? 공영방송이 옳은 거예요. 국영방송이 옳은 게 아니라고요.

중국의 CCTV가 한류 같은 것 못 만들어요, 국영방송이 되는 바람에. 공공기관 지정하고 이 런 게 그래서 못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고. 두 번째, 대기업에게 방송 독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자본이 유료방송에 참여하도 록 열어 준 것은, 소유 규제는 풀어 줬지만 점유 율까지 여기가…… 예를 들어 대기업이 유료 방 송시장의 80%까지 점유하게 되면 규제기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수십 년 된 사회 적 합의인데 이것을 '불필요한 규제'라는 표현으 로 쓰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일 몰제? 일몰제 같은 꼼수 부리지 마세요.

지금 스카이라이프가 고객이 200만인데요, 3분 의 1로 규제하면 800만이에요, 전체 유료 가구. 지금보다 4배나 더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불필요한 규제? 지금보다 4배의 가구 수를 더 확 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 무슨 불필요한 규제?

15년간 위성방송 해도 200만밖에 가입자를 확 보하지 못했는데 800만으로 열어 주겠다는 건데 왜 그것조차 불필요한 규제고 그것 하면 스카이 라이프 망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규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도 안 되 는 소리들을 공무원들과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 요.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방송철학과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독점을 막자는 거예요. 3 3%·33%·33%. 이게 왜 불필요한 규제입니까?

다매체 · 다채널 시대에 특정 플랫폼과 특정 서 비스가 독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자본주의시장의 원리에 반드시 필요 한 균형정책입니다. 그것을 규제정책의 완화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규제감독기관 또 정부 정책기관들 이 업체의 논리에 휘말려서 이런 철학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신규로 상정한 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류지영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미래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속개해서 KBS와 EBS 결산승인 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KBS와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 **201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방송공사 제출)

75. 201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 인안(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2013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5항 201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 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KBS와 EBS에 대한 결산 심사에는 관례에 따라서 방통위원회에서 허원제 부위원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대현 KBS 사장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조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 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은 2013회 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KBS는 2015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공영방송이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콘텐츠로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며 국민통합 및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미래 30년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KBS 임직원들의 소명의식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라서 광고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KBS의 재무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방송법에서는 수신료를 KBS의 주재원으로 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수신료의 수입 비중 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KBS 보다 8배나 많은 수신료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파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영국 콘텐츠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류를 100달러 수출할때 소비재 수출은 4배 가까이, 400불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콘텐츠에 대한투자는 가장 효과적인 문화 교류이자 외교수단이며 수출과 관광 진흥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 수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KBS는 향후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서 늘어나는 재원을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국부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세계적인 공영방송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가 오직 시청자를 위한 공익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국정감사와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 1월 대개편 등 KBS 방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KBS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성오 시청자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KBS의 집행기관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종 감사입니다.

금동수 부사장입니다.

권순우 편성본부장입니다.

강선규 보도본부장입니다.

이응진 TV본부장입니다.

김석두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성오 시청자본부장입니다.

서재석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 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EBS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EBS 사장 신용섭입니다.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 계연도 EBS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751억 원으로 예산 대비 94.8%를 달 성하였고 비용은 2712억 원으로 예산 대비 6.5% 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3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9억 원 적자 상황을 2013년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비 용 절감과 EBS의 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한 콘텐 츠 판매 및 광고 수입 증가 덕분입니다.

가능한 모든 업무에 마케팅 개념을 접목하고 부 단위로 연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 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과 이용자의 변화에 따라 공 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콘텐츠 를 제작하고 유통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 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245억 원을 기록했던 콘텐츠 판매 수입이 35.5%가 늘어난 332억 원을 기록하 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년도 353억 원이었던 광고 수입도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요불급한 고정경비를 절감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신성장 사업 발굴 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 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에 EBS는 3대 경영목표를 인성교육 강화, 평생학습 지원, 교육복지 확대로 정하고 공 교육 보완, 평생학습 지원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능 연계사업 등 공교육 보완 역할을 충실하 고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재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수능교재는 최 근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엄격한 품질 관리와 검수를 거치므로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 니다.

EBS는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 더 욱 편리하고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끊임 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국민과 세계 앞 에 서겠습니다.

EBS가 세계 최고의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EBS 간부를 소 개하겠습니다.

윤문상 부사장입니다.

김병수 방송제작본부장입니다.

김봉렬 학교교육본부장입니다.

신영대 융합기술본부장입니다.

손홍선 콘텐츠사업본부장입니다.

류현위 콘텐츠기획센터장입니다.

김동순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남형수 이사회사무국장입니다.

이호준 감사실장입니다.

최미자 교육방송연구소장입니다.

이승훈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재근 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결산에 대한 개요는 경영지원센터장이 보고드리

○위원장 홍문종 EBS 역시 세부적인 결산보고 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KBS와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2013년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KBS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KBS의 2013년도 수입은 1조 557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8억 원이 감소하였고 비용은 1조 5478억 원으로 2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43억 원으로 전년도 에 6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외형상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고유의 영업실적을 나

타내는 지표인 사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매출액이 제작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사업이익 개선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둘째, 콘텐츠 판매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5.7%가증가한 20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의 정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콘텐츠 판매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콘텐츠 판매수입의 증가는 고무적인 실적으로평가됩니다.

다만 2013년 콘텐츠 판매수입의 증가액 411억 원은 전액 국내 판매수입의 증가에서 발생한 것 으로 해외 판매수입의 확대 노력이 보다 적극적 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KBS는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이 미흡하여 상위직급 비율의 과다와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직급 이상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2008년 47.2%에서 2012년 57.1%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EBS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EBS의 2013년도 수입은 275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10억 원이 증가하였고 비용은 2713억 원으로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39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손실 8억 7300만 원 대비 47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 EBS의 차입금은 7600만 원으로 2009년 도부터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디지털통합사옥 신축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1년까지 차입 누계액이 436억 6500만 원에 이르는 등 향후 차입 경영에 따른 재정 안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BS는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현 사옥이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차입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EBS의 장기근속 및 고령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EBS의 인력 및 인건비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EBS는 직무 간 교류를 확대하여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넷째, EBS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EBS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동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명절휴가비 및 자녀양육수당 등과 같은 복리수행비 등의 신설을 지양하고 성과급의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위 지침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방송시장이 상업·유료화됨에 따라 EBS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EBS는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달성 및 소외계 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비율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작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 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 은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5분으로 하고 부족 하면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지금 KBS, EBS에서 제출한 결산자료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보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수익성, 매출 구조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현 이 상황 이것은 상당히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KBS가 이것은 2013년 기준으로 지금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사장님, 올해 대략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균형 수지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긴축운용을 했는데 약 400억 원 비용을 절감하고 약 200억 원정도의 신규 수입을 창출해서 600억 원의 수지 개선효과를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

말에 또 예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우상호 위원** 지금 이제 결국은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 확대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긴축으로 적자를 메우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 런 취지시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우선 금년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긴축을 안 할 수가 없고, 한편 수 입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두 가지, 어쨌든 올해 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던 이유 중에 월드컵중계 결손이 있는 건데 앞으로 지상파 방송들이 주요 경기에 대한 경기 중계권 어떻게 할 거냐…… 방 송협회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은 3사가 방송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4년마다 협 의를 해도 4년마다 먼저 이것 입도선매해서 팔려 고 하는 그런 방송사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방 통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그냥 놔두실 건지 방통위원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슨 제도 개선을 할 생각 없으신 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파 방송사들 자체 내부적으로 과거의 코리아풀……

○**우상호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하는 거 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계속 맡겨 놨더니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잖아요. 개입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지난번 상황 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상호 위원 아니,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방송사들이 상호 그렇게 과거 코리아풀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광고제도 개선책을 지난번에 발 표하신 바 있는데 왜 지금 주춤거리고 계신 거지 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지금 저희가 그동안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쳤고요, 전문위원회 그 결과를 보고받고 그리고 저희 방통위에서 논 의를 하면 아마 이달 중으로는 최종적인 어떤 결

론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 제도 개선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오기 때문에.

KBS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중에 사 실은 이것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질의한 내용인 데 인력구조 상위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요. 지 금 상위직 직군으로 보면 상위직은 급격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말하자 면 중하위직에서 고용제도 자체에 변화가 있던 건데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계속 누적된다 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상위직은 늘어나고 중하위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게 제작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인데 방송인력의 구조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조직과 달리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고 수평적인 전문인 조직이라서 고령화가 되더라도 현업에서 일하는 그런 제작인력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 건비가 가중된다거나……

○**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은 감소하는데 상위직은 늘어서 계속해서 인건비 부담이 지금 35%를 넘 어서기 시작하면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게 계속적인 경영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 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는 얘기가 15년째 나왔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그런데 지금 이 부 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EBS에 도 좀 질의할 게 있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수능이 이번에 쉽게 출제된 것 때문에 EBS와 연계된 것이 주요인이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 왔어요. 실제로 EBS 교재와 연계한 수능출제 때 문에 이번에 난이도가 쉬워진 것이다 이렇게 봐 야 되는 겁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저는 그렇게 생 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우리가 마치 오류가 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EBS는 오류가 없었고요, 난이도 조정 같 은 것은 출제기관에서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하 는 거지 저희가 난이도 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상호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 니다.

준 거예요? 1분을 더 주신 거예요?

- ○위원장 홍문종 사회 보셔야 되니까……
- ○**우상호 위원** 사회를 봐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 생각은 지금의 수능출제 형식이 EBS 강의와 연계해서 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난이도 조정은 평가원의 문제다 이건가요?

-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기사가 나와서 EBS에 연계된 수능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어느 정책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EBS로 인해서 사교육비 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해서 사교육비 시장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사기업・ 사교육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고 있습니다.
- ○**우상호 위원** EBS가 교육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EBS 자체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홍문종** 마무리하시지요.
- ○**우상호 위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구먼. 말씀하시지요.
-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능이 평균 한 270억 정도 지원을 받다가 매년 한 40억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억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이면, 저희가 아무리 자구노력을 해도 사이트 운영 이런 데 상당 고정비가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노력도 계속하겠지만 이 지원은 어느 정도는 꼭, 180억 수준 이하로는 더 이상 줄여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상호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라 든가 다양한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KBS도, EBS 도 지금의 이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문종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KBS 사장님, 이것 재무상태표 보니까요 재고 자산의 제작품이 올해 연도가 작년 대비 많이 늘 었거든요. 이 제작품이라는 게 뭡니까? 뒤에 아 시는 분 있으면 대답하셔도 되고요 만약 잘 모르 신다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예산주간 김윤로 안녕하십니까? KBS 예산주간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미방영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저희는 재고자산 형태가 방송으로 되는데 실제 자금지출이 있었습니다만 회계상의 인식은 실제 그 방송이 된 시점의 비용으로 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지출했지만 아직 방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작품 영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제작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 볼게요.

2012년 대비 미방영 작품 숫자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미방영 작품당 가격단가가 올라간 겁니 까?

- ○한국방송공사예산주간 김윤로 이것을 구체적 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미방영 되는 작품이 예를 들어서 작품성이 없는 작품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한국방송공사예산주간 김윤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미 내년 1, 2월에 방송될 것들을 지금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이미 다 지출이 됐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 재산적가치가 있고 내년 1, 2월에 방송이 됐을 때……
- ○**이재영 위원** 여기 있는 것들은 분명히 방영이 될 작품들이라는 거지요?
- ○한국방송공사예산주간 김윤로 예,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기 보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래 일하고 힘들면 휴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예전에 딴 분한테 들었는지 사장님한테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그건 믿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휴가 보상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이 연평균 한 223억으로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 왜 이러지요? 1인당 450만 원이나 달하네요. 이것은 지금 줄여

야 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연차휴가 보상수당 인데요……

○**이재영 위원** 유급휴가 사용을 좀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초에 회사에서 촉진을 하려고 계획 을 했었는데 KBS가 세월호 이후에 상황이 있어 서 촉진책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하실 겁니 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국감 때 지적한 적 있지요?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2015년 에는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점 칠팔 %인가 여기에 서 좀 올라가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본사 기준으로 라디오 예산이 255억이 좀 못 되는데 2015년도에 는 20억 정도를 증액해서 제작비를 증가시킬 겁 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EBS 사장님!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이재영 위원** 사교육비 절감을 많이 했다고 지 금 자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수능과 관 련돼서는 고등학교 사교육은 저희가 크게 절감했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쪽으로 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지금 전체 사교 육이 초·중·고등학교가 70% 이상인데 사실은 고등학교는 우리 정부 지원정책으로 사교육을 절 감할 수 있는데 초·중은 저희가 지원을 거의 받 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등・중등의 사교육을 줄 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 역할은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 으로 굉장히 낮은 건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계속 높여 갈 생각이십니 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저희가 수입이 되면 가능한 초·중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방 송환경이 전체적으로 녹록치 않고 또 특별교부금 도 계속 줄여 가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데 또 한 계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15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 실 계획이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지금 예산을 편 성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정부 지원금이 또 더욱 줄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 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초등학교·중학교 사교육비는 지 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이재영 위원** 이것은 다 알고 계신 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에 앞으로 EBS가 어떤 식으 로라도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역할을 해야 됩 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을 좀 인지하고 계신 거고 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그래서 저 희가 항상 초·중학교 하는 데 정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총 15억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 래서 고등학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300 억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초·중학교 9학년에 한 110억을 쓰는데 그게 다 EBS 자체예산, 15억을 빼고는 전부 EBS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의 롤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민희 위원 KBS 퇴직 및 신규채용 현황표 를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년퇴직을 1421 명이 했고 신규채용이 1086명입니다. 이것이 인 력감축의 수치적 자료는 되겠지만 그게 뭐 그렇 게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전문위원은 명예퇴직을 포함해서 뭔가 방안 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이 계획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고 그래서 사장님께만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 고민하고 계신, 마련하고 계신 방안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기 때문에 나중 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질문할 겁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KBS·EBS 지정 빠진 게 다시 들어간 것 또 하나는 정윤회 관련 보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사장님, 최근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파동,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정윤회 파동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 뉴스로 보면 뉴스밸류가 굉장히 높은 건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지금 각 프로들이……

○최민희 위원 그냥 짧게 좀 답을…… 맞지요, 뉴스밸류가? 그런데 제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상파하고 종편의 메인뉴스 보도량과 보도 내용, 꼭지 배치 등을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11월 28일 날 KBS가한 꼭지, MBC가 한 꼭지, SBS가 한 꼭지 다루었는데 JTBC 여섯 꼭지, 채널A 여섯 꼭지, TV조선이 여섯 꼭지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전체 비율이 첫날 보면 18 대 3이에요.

그리고 꼭지 배치도 그렇습니다. KBS가 열한 번째, MBC 열일곱 번째, 그나마 SBS가 세 번째 였는데요, 종편들은 전부 $1 \cdot 2 \cdot 3 \cdot 4 \cdot 5 \cdot 6$, $1 \cdot 2 \cdot 3 \cdot 4 \cdot 5 \cdot 6 \cdot 7$ 이렇게 앞에 배치했습니다.

보도량은 단연 차이가 나서 JTBC가 20분, 채널A가 11분, TV조선이 17분, 여기에 반해서 KBS가 1분 29초, MBC가 1분 37초, SBS가 1분 53초예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뉴스밸류가 있는 보도에서 지상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갔고요. 그다음에 11월 29일도 변화가 없습니다.

KBS 두 꼭지, MBC 한 꼭지, SBS 두 꼭지인데 종편은 이때도 열여섯 꼭지 다뤘고 11월 30일에도 지상파 한 꼭지씩, 종편은 합쳐서 열두 꼭지 다뤘고요, 12월 1일 날이 돼서 뒤늦게 지상파가 조금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KBS가 다섯 꼭

지로 늘어나요, 그것도 1 · 2 · 3 · 4 · 5로.

이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나 특히 보 도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종편 들이 다퉈가면서 특종보도를 내보내는데 사실은 지상파는 쫓아가기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긴급하게 모니터를 했고 사장님도 이 비 교표를 못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보 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KBS의 존재 이유는 건강한 의제 설정 기능을 하라는 건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제 설정 은커녕 쫓아가기에 급급했다, 이 부분은 한번 검 토해 보시고 또 국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좀 이따 낼 거니까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KBS가 주요 의제 설정에서 종 편에 밀렸다 이건 정말 방송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 이번에들어간 것 보셨지요? 이게 독소조항만 쭉 모아본 겁니다. 이 중에 기능 조정 보면요 기재부장관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서 기관 통폐합, 기능재조정 및 민영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가이 조항이 적용되면 신경 많이 쓰이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이미 저희 KBS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오늘처럼 결산감사 도 받고 경영평가를 따로 받고 이사회의 의결, 독립된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경영을 하고 있습 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항 반대하 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이중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22조, 35조는 기관장, 이사, 감사의 해임 요청을 방통위원장이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고 기재부장관이 비상임이사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방통위원장이 해임 건의할수 있습니다. 이것 독소조항이고요.

사장 임명절차도 지금은 이사회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KBS의 경우. 그런데 이법이 적용되면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사장을. 그러면기재부장관 눈치 안 볼 수 없겠지요?

그리고 사장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목 표, 성과급 등이 포함된 계약을 기재부장관 협의 후 방통위원장과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부위원장님!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 ○**최민희 위원** 2006년에 방송위원회가 이 법안 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 ○최민희 위원 이번에도 이 법에 대한 입장 변 화는 없으신 거지요, 2006년과?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저희도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혁신 차 원에서 이 법안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KBS와 EBS 같은 공영방송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방송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방 송장비 국산화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장비 국산화 문제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 각을 합니다. 방송업계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국산 장비 도입률이 불과 10~20% 수준이라는데 맞습 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 ○**강길부 위원** 그래서 주요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국산장비도 핵심 부품은 70% 이상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카메라 등 고가 의 제작·편집 장비는 일본업체 제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국산장비는 모니터, 문자발생기 등 중 저가 주변장치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방송장비 시장 규모도 최근 꾸준히 성장 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 라서 국내 방송장비 시장이 중소기업 위주로 형

성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송장비업 체의 수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방송기 술산업협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국내 방송장비업체 수는 한 180개가 되고 중국의 한 2000여 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 조가 되어 있고 이미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최 근 UHD 초고화질 방송용 카메라, 실시간 인코더 등 차세대 방송장비를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차세대 방송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도 서 둘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격해 가야 하지 않 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방통위 부위원 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미래부하고 깊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부하고 협력을 해서 국내 UHD 방송장비 활 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 송정책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KBS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UHD TV 실험방송용 구매장비 목록을 봤더니 39건의 구입 장비 중 국산제품은 5건에 불과합니 다. 이 상태로 UHD 방송이 실시되면 국산화는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부터 방송사와 장비업체 가 공동으로 UHD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최근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비 개발 초기부터 산학연이 협력해서 기술 신뢰성을 확보 하고 국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보는데 KBS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저희가 UHD 방송 을 준비하면서 장비 개발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 변환장치를 국 산화 성공해서 국산장비로 방송을 했고 지금 현 재 국내 장비업체하고 8건 또 국내 연구기관과 7 건의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UHD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KBS 사장님, 하여간 지금 공공기관으로 지정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가진 건 확 실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EBS 사장님은 어떠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저희는 하여간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현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식 위원 지금 우려하는 것은 특히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산요청 권한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경영실적 평가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일산 신사옥 건설로 부채 를 떠안게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존립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다음에 KBS 사장님 말이지요, 연차휴가 문제인데 KBS 경영진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평균 5.1일에 불과하고 대신 직원들이 매년 500만 원의휴가비를 챙기고 있어 그 결과 5년간 1118억 비용이 지출됐다, 그래서 큰 재정부담이다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원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 가지 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지금 새해부터 직원 들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촉진할 생각입니 다.

○**최원식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 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KBS 내에서 시간외수당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최원식 위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KBS가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일부를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니까 실제 시간외수당을 계 산하지 않고 일부 그냥 준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일부 포함시킨 이유는 포괄임금에 포함시킨 건데 그것은 방송의 업무의 특성상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나 PD의 업무는……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승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식 위원 일단은 그러면 TF 구성하신 다음에 법률 분석하신 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알겠습니다. 지금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이것까지 되면 그나마 이번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난 편이 아닌데 수익 이상의 어떤…… 만약 이게 패소할 경우에는 엄청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제대로 하고 계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보고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지금 TF팀에서 노 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라는 건 일 부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식 위원** 일단 법률적으로 준비한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다음에 EBS 사장님 말이지요, 제가 오전에 이사장님 문제를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또 보니까 맨 처음에는 1억 2000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사장님께서 그건 억울하다, 자료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직원들을 징계하셨네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최원식 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지금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세요? 조사한 게 있으니까 징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셨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감사를 해서 징계한 겁니다.

○최원식 위원 감사 결과 주시고, 그러면 그 나 머지 8000만 원은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러니까 8000 만 원은 공적인지 사적인지 지금 애매한……

○최원식 위원 그걸 하셔야지요. 아니, 도둑질한 사람을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를 좀 과장스럽게 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지금 처벌한 거고 막상 도 둑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래서 지난번 에 위원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지금 법적으 로 외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 결과를 빨리 주시고. 저는 이 해가 안 갑니다. 만약 그런 처벌을 한다면 같이 하셔야지요. 그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부의 직 원 좀 서류 잘못했다라고 거기는 먼저 징계 내리 고 막상 몸통인 분은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 고 있지요? 지금 조사한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 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최원식 위원 그리고 EBS 출판사업 이익이 2013년 403억, 그중에서 수능교재 이익이 313억 이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최원식 위원 수능교재 이익은 학교교육사업에 전원 재투입되는 것……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매출을 보면 그중에서 출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공영방송사 수입 구조로서는 좀 비정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고, 지금 전체적으 로 학생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수능교재를 비롯한 출판 분야의 매출이 증가는 안 되고 감소되겠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지금 계속 감소 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이, 3분의 1씩이 되니까, 겪게 되니까 어려운데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수입 구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저희가 출판에 너무 의존도가 높 은데 학생 수는 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

장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방송 품질을 높여 서 콘텐츠 판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가 뭐, 그래도 위원이니까, 관심을 갖는 위원이니 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저 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류지영 위원 EBS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출제 오류로 대통령께서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것 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당장 EBS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 올해 결산을 살펴보니 출판사업 수입이 2012 년도에 비해서 36억 원가량 증가해서 1027억 원 으로 총수입의 35%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등 부분 교재수입 비율이 거의 80% 인데요.

제가 이미 국정감사에서 EBS 교재 수능 연계 출제 비율은 현재 70% 수준이니 출판수입 대부 분이 그에 따른 이익이니까 언제까지 EBS 교재 와 수능 연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능 연계정책이 변화되면 EBS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국감 질의 이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 까? 혹시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저희 간부들이 모여서 EBS가 출판이 줄어드는 것 또 지금 정책 이 안 변해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출판 고등 학교 수입이 줄 텐데 우리가 신성장을 찾아야 된 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연구소의 과 제로도 신성장 찾기 위한 그것을 하고 또 신성장 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영어든 수학이든 사실상 교재를 통째로 외우는 등 또 EBS 교재 수능 연계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전문가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지적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책 변화가 반드 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게 바뀐다면 EBS의 수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지적된 EBS 교재 오류를 수능 한 달 전에서야 수정한 적 있으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류지영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오표를 공개했는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답을 그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내역을 보니 1000억 원 대의 출판사업 수입 중에 절반만을다시 출판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토작업도 철저히해야 되고 또 재투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2, 3년 전에 우리 교재에 오류가 나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12단계로 신설하고 굉장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도 많이 투입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EBS에 오류가 안 났는데 자꾸 언론에서는 오류가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굉장히 투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예.

아울러 수능과 상관없는 초·중등 교재 있지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판매가 상위권에 들지않는지 그 이유도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고요. 출판사업비 지출 비중을 높여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흥미로운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류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KBS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자회사가 경쟁력을 높여야 시너지효과 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본사가 더욱 발전하고 기업의 존립이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KBS 역시 조직 경량화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해서 수직적 분화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KBS의 자회사인 비즈니스와 아트비전, 시큐리티는 여전 히 매출의 본사 의존도가 60%를 초과하고 있었 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KBS 비 즈니스는 시설관리사업, 방송기술사업, 방송차량 사업의 매출액 대비 원가의 비중이 높아서 매출 총이익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 과 정에서 투자 결정이 미숙하여 당초 계획과는 달 리 관람객 부진, 협찬 유지 실패 등으로 21억 7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KBS아트비전의 경우에는 2012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증가하고 45억 원에 가까운 돈을 2년간 유지하여경영을 잘한 듯 보이지만 사실 같은 해에 KBS는 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KBS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미술업무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미술인건비 연간계약제에 따라서아트비전으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미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것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KBS 비즈니스와 아트센터가 이러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자회 사를 설립한 어떤 명분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앞으로도 KBS 비즈니스는 투자 대상에 대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해서 투자 결정의 미숙함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하고 아트비전은 본사와의 계약에서 밀어주기식 거래 관행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견해를 듣 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비즈니스와 아트비전 공히 위원님 지적대로 본사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사 의존도를 줄이고 계열사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로 인한 시너지가 창출되면 이는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도 힘들고 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회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 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잘 알겠습니다.
- ○**류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개호 위원**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조대현 사장님, KBS 수익성 분석표를 보니까 작년도는 흑자를 내셨네요. 당기순이익이 43억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에 62억 손실이 난 것에 비하면 개선이 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 5~6년간 흐름을 죽 보면 결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요. 2009년도에 693억 흑자를 냈고 2010년도에 434억, 11년도에 48억 흑자였는데 2012년도에 62 억 적자로 줄었다가 작년에 43억 흑자를 낸 것입 니다. 흐름으로 볼 때 상당히 지상파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근 거로 회사 고유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이익을 보면 참 심각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것은 사업수익 관계입니다. 2011년도에 651억 적자였고 12년도에 380억 그리고 2013년 작년에는 214억이네요. 그러니까 적자규모가 조 금씩 줄고는 있는데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지상파의 큰 위기라는 것인데 그 위기 극복의 방안을 사장 님께서는 큰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우선 내부적으로 콘 텐츠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수입이 수신료 외에 광고수입이 두 번째 주수입 원인데 그 부분의 경쟁력을 높여서 광고뿐 아니 라 콘텐츠 판매 수입까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구 노력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분명 히 하나의 자구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진 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인이 경쟁매체 의 출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종편을 비롯해서 여러 경쟁매체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공영 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그것과 분명히 차별화를 이룩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보도의 공 정성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의 객관성을 반드시 지켜 가면서 정말 가볍지 않은 중후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 민적 신뢰를 얻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제 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편을 비롯한 다른 매 체와 분명한 차별성을 유지해 갈 때 이러한 위기 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밖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공공영 역에서 KBS가 할 일을 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통해서 공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재 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수신료를 포함해서 또 주수익인 광고수입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 다마는 공정성과 객관성, 공영방송다운 중후함 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말 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신료와 광고수입이 정체되고 있지요? 수신료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따질 바는 아닙니다마 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콘텐츠 판매 수 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아주 고 무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봐 요. 콘텐츠 판매 수익이 국내 수익은 매년 굉장 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해외 콘텐츠 판매는 2010년 211억부터 시작해서 작년 306억까지 증가의 정도와 폭이 굉장히 미미합니 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엄청난 한류열풍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 게 콘텐츠 판매 수익이 더디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은 KBS에서 그러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금년은 전통적인 해 외 시장인 일본 시장이 위축되고 중국 시장이 일 본 시장을 역전한 해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한국의 콘텐츠 상품, 한류 상품이 들어가면서 규 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제 작이라거나 포맷 판매라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KBS가 판매할 콘텐츠의 권리 확보가 굉장히 중 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제작 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 장 민병주입니다.

KBS 사장님, 방송사별 총 부채 중에서 퇴직급 여 충당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KBS가 유난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여러 번 있었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는 하고 계신 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지금 그것을 줄 이기 위해서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안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해 주 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5년간 구매한 국산·외산 장비 비율을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오히려 국산장비 비율이 줄었어요. 수량으로 비교해도 줄고 가격으로 비교해도 줄고, 아까 국산 장비 관련해서 출연연이나 장비업체하고 지금 협력을 준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를 개발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신지모르겠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지금 방송문화연구 소와 기술본부에서 여러 장비업체와 연구기관들 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 중에 보면 사이버테러 대응 및 정보보안조치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3년에는 29억을 긴급 편성해서 사용했고 2014년에는 26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4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점점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이버테러 관련해서는 점점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능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예산을 점점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줄

이고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지난 국감 때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제1 금융 권 수준의 보안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내용상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사실 예산의 문제보다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 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EBS 사장님, 자회사 중에 EBS 미디어가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EBS미디어를 설립한 목적이 수 익창출을 통한 EBS의 재무건전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민병주 위원 그런데 문화협찬사업에서 17억 3000만 원, 교육진흥사업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해 보니까 문화협찬사업에서는 예측 대비 한 36% 그리고 교육진흥사업에서는 예측 대비 18% 정도밖에 수입을 거두지 못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민병주 위원 물론 이 자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 2년 만에 많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좀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저희가 자회사 경영을 살펴보니까 설립 초기에는 조직이 안착하고 이러느라고 활동을 못 했고요. 목표를 너무 의욕적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균형, 그리고 문화사업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망되고 사업이 안착화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방송서비스 제공하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예.

○민병주 위원 장애인방송서비스 제공을 보니까, 물론 목표 비율은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의 편성의무 목표 비율은 초과 달성하셨는데 보면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은 큰 폭으로 상

승했지만 다른 수화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은 오 히려 상당히,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2013년 대 비 줄어든 것이, 수화방송은 오히려 줄어들었거 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액이 감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은 계속 감 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지금 장애인방 송 제작비 지원은 정부의 지원인 방발기금이 7억 6000에서 4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에 매칭하 는 우리 자체부담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 다. 저희가 5억에서 지금 8억 8000까지 늘려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체부담 금을 늘려서 장애인방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민병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자체부담을 증가시키겠다라고 말씀 하신 것은 고무적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EBS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쪽만 계속 늘릴 수 도 없을 것이고 또 아까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 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EBS가 사실은 공영방송으로 공적 재원이 수입의 반 이상이 돼 야 되는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이 안 되는데 그나마 지금 특별교부금을 매년 100억 정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주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도 줄이면서, 그리 고 우리 자구 노력에는 사실 한계도 있을 텐데,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수신료 인상 등 공적 재원으로 우리 EBS를 더 높여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장병완 위원 오전에 미래부하고 방통위 할 때 는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을 텐데 아마 조 사 장님하고 신 사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별로 질문거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조 사장님, 지금 KBS 간접광고를 보니까 금년 8월에 7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MBC나 SBS, 다 른 지상파에 비해서도 훨씬 비중이 작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KBS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 게 급격히 늘고 있다는 말이지요. 2010년에는 불 과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었다는 말이지요. 그 런데 지금 이게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급격히 늘 었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2011년부터 간접광 고가 허용되면서 급격히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KBS가 간접광고를 적 극적으로 늘려 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적 재원이 많을수록 공적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지상파 광고가 계속 줄 어들면서 저희가 자구 노력도 해 나가지만 수입 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광고에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병완 위원** 지금 어차피 KBS 경영상의 어 려움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이 이해가 되기도 하 지만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 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이 간접광고하 고 협찬하고의 구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결국은 협찬을 하면서 편법적으로 간접광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지상파 방송사 의 광고효과의 제한과 관련된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간접광고의 비중에 비해서 KBS가 제재받 은 비중이 몇 배 더 높다는 말이지요. 비율로 본 다면. 그래서 이것은 역시 아무래도 편법적인 협 찬이 간접광고가 허용되면서 그것도 같이 늘고 있어서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공영성도 조금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료 인상에 의한 어떤 공적 재원 확 대 이외에 다른 방안을 KBS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간접광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콘텐츠 경쟁력 을 높여서 그 권리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 는, 물론 간접광고나 협찬이 법적으로 KBS의 재 원으로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바람직한 방 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제재건수가 많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좀 다른 것 같아서……

○**장병완 위원** 상대적인, 예를 들어서 지상파

방송에서 차지하는 간접광고 비율하고 제재건수의 비율로 본다면 몇 배 더 많다, 절대건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KBS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다른 지상파보다는 KBS가 뭔가다르다, 아까 최민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의제 설정의 문제라거나 또는 보도의 논조라거나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듯이 사실은 간접광고나 이런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 나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작년 103억 정도면 그렇게…… 그것도 알토란같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하여간 뭔가 KBS가 고생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청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리고 신 사장님, 아까 민병주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던데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문제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방송이 최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장애인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다문화라거나 저소득층 이런 소외 대상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런데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편성비율로 보더라도. 보니까 12년도에는 9%에서 작년에는 한 6%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아까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적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특수 서비스라고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지금 편성시간 으로 하면 줄어들었는데 제작비하고……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진짜 많은 국민이 보는 시간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다문화가정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청률이 평균 1%인데 '다문화 고부 열전' 같은 경우는 3%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천문화재단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작비와 시간대는 굉장히 좋은 데로 해서 시청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시간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제작비를 더 투입하고 시간대를 더 좋은 데 배치 해서 많은 국민이 보게 하자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작비 늘린 것 그다음에 시간대를 좋은 시간에 배치한 것 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병완 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사실은 언어의 차이가 사회 적응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시간대에 배정하고 가급적이면 시간대도 배려하고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제작비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안보는 시간에 하고 제작비도 얼마 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각은 제작비를 제대로 들여서좋은 시간에 방송해서 소외계층이 보는 방송을하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줄인게 아닙니다.

○장병완 위원 신 사장님, 내가 교육방송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소외계층에 대한 방영시간도 확대하고 배려를 통해서 우리 전체의 사회통합에 EBS도 기여를 해 달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더욱더 노력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다문화 고부 열전'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EBS 사장님, 다문화 고부 관련 프로그램은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주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KBS…… 이게 해산조항이 있어요. 사장님, 보셨지요?

-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예.
- ○최민희 위원 그 해산조항은 만약에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기재부장관이 기관을 해 산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특별히 정윤 회 파동과 관련한 지상파, 종편 보도량을 죽 분 석한 이유도 이게 지난 정권부터 방송 장악 문제 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계속 남아 있고, 그런데다 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KBS, EBS 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법률까지 나와서, 이 상 황에서 꼭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민감한 의제 에 관해서는 KBS 종사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검열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해서 대단 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문창극 총리 보도처 럼, 이길영 사장 파동처럼 KBS 조직이 느리지만 자체 정화능력이 있다는 것 또한 믿고 있기 때문 에 이번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KBS, EBS 제외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사장님은 물 론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한 부분은, 이것은 공공기 관의 법률과 상관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경영공시 부분, 가능하면 경영목표 · 예산 · 결 산 · 인력현황 등, 감사결과까지 공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표하자 이것은 이 법안과 상관없이 지 금도 사실 하게 돼 있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해서 끝까지 자료 안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 주셔야 됩니다. KBS 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비밀일 수 없고 요.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인 돈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세 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은 KBS가 먼저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입법조사처도 그렇지만 안행부에서도 기관 KBS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표에 있 어 사용일시, 목적, 사용대상, 금액, 방법, 사용장 소 등 가능하면 세부내역을 공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 ○최민희 위원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제도개선 TF 만드셨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 ○최민희 위원 이것 내용 좀 살펴보고 계신가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웬만한 것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위원 협찬 규칙이 있어요. 아까 KBS 사장님이 협찬이나 간접광고를 바람직한 방향으 로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방통위가 운영하는 협찬 규칙 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작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요, 협 찬 액수가 공개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지에 나온 것처럼 오락프로그램은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협찬받으셔야 되고, 교양은 5000만 원 이상 받으 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 제작 비가 7000만 원 안 들어요. 그런데 협찬은 2012 년에 1억 원 이상 받으셨고, 2013년에도 거의 8200만 원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통위에서 파악하셨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저희가 파악했는데 그게 아마 협찬이 아니고 시상품으로 일부는 제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 니다.
- ○최민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찬을 조금 세분 화하셔야지요. 물품 협찬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있으면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되고 엄격하게 지키시면 KBS도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현물 협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 가까지도 이 규칙에서 규정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외한다, 어디까지 한다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국감에 자료집도 냈고 계 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조대현** 지금 대부분의 협찬 과 간접광고는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지적을 당하는데 앞으로는 고쳐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다가 길환영 사장님을 이길영 사장님이라고 그랬대요. 고쳐 주세요.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 도중에 이개호 위원, 조해진 위원, 류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KBS와 EBS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 에……

민병주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님도 서면질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KBS와 EBS 결산 승인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S 사장과 EBS 사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 길 부 류 지 영 권 은 희 김 재 경 문 병 호 민 병 주 배 덕 광 서 상 기 우 상 호 송 호 창 유 승 희 이 개 호 이 군 혀 이 재 영 장 병 완 조 해 진 최 민 희 최 원 식 홍 문 종 홍 의 락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인 용 전 문 위 원 정 창 모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장 관 최 양 회 제 1 차 관 이 석 준 방송진흥정책관 이 정 구

워 최 쥬 위 장 성 부 위 워 잣 허 워 제 원자력안전위원장 0 은 철 한국방송공사 현 사 장 조 대 감 사 김 승 종 부 사 동 수 장 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장 부 사 잣 방송제작본부장 학교교육본부장 융합기술본부장 콘텐츠사업본부장 정책기획센터장 콘텐츠기획센터장 경영지원센터장 이사회사무국장 감 사 실 장 교육방송연구소장

대외협력국장

다시털통합시옥건설단장

석 서 재 김 유 로 신 용 섭 유 문 상 김 병 수 김 봉 렼 신 옂 대 홍 손 선 정 호 영 류 혀 위 동 순 김 형 수 남 0] 호 준 미 자 최 훈 이 승 김 재 근

순

선

응

석

성

궈

강

0]

김

김

우

규

진

두

오